

안 건 번 호	제 2019 - 15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1. 29. ( 제 8 회 )	

##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징수예산 및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관리 예산 변경-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 출 자	위원장 박 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9. 11. 29.

## 1. 의결주문

- 통합징수 예산 및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관리 예산 부족에 따른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 2. 제안이유

###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19년 5월 예상치 못한 우편요금 인상\*으로 11 ~ 12월 고지서 발송 비용 48억원이 부족하여

- 정상적인 연금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민연금 출연금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에 13억 5천만원 추가 출연 필요

\* 우편요금 인상 ('19년 5월 일반 330 → 380원, 등기 2,130 → 2,180원)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사회보험 통합 당시 합의된 분담비율: 건강 59.5%, 연금 28.0%, 산재 6.6%, 고용 5.9%(10.8)

### < 4대 보험 분담금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 예산			분담비율
	당 초 (A)	변 경 (B)	증감 (B-A)	
계	298,690	303,510	4,820	100%
건 강 보 험 분 담 금	197,546	200,414	2,868	59.5%
국 민 연 금 기 금 출 연 금	71,107	72,457	1,350	28.0%
산 재 보 험 기 금 출 연 금	15,026	15,344	318	6.6%
고 용 보 험 기 금 출 연 금	14,931	15,215	284	5.9%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수료	80	80	-	-

※ 기관별 추가 분담금 산정내역 별지 p.19 참조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공단도 19년 5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10~12월 법정통지문 발송비용 부족하여 가입자 자격변동통지 등의 정상적인 안내를 위한 9억9천1백만원 추가 지원 필요

('19.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향 후 소요액(D)	추가소요액 (E=D-C)
	목	세목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관리 (사각지대 축소/사업비)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4,117	12,538	1,579	2,570	991

### 3. 주요내용

-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 사업비 관련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13억 5천만원 증액 출연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사각지대 해소 사업) 관련 9억 9천1백만원 증액
- 총 필요예산 23억 4천 1백만원 증액 편성을 위해
  -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에서 7억 5천만원 및 여유자금운용의 단기 자금운용에서 15억 9천 1백만원 감액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 및 제104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의3,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시행규칙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 다. 관계부처협의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협의

< 별 지 >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징수예산 및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관리 예산 변경-

2019. 11. 29.



# 목 차

1. 사업 개요 .....
2. 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 내역 .....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붙임]

1. 관련 법령 .....
2. 기금운용계획 변경 타당성 체크리스트 .....
3.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 .....
4. 추가 소요 현황 .....

## 1. 사업 개요

###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사업목적)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통합징수(고지, 수납, 체납관리)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4대보험 고지관리(고지서 발송 등), 수납관리(자동이체·과오납환금 안내문 발송 등), 체납관리(체납처분, 체납 통지서 발송 등), 고객센터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출연금(건강보험공단 위탁)
- (사업근거)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 ※ 합의된 분담율: 건강보험 59.5%, 국민연금 28.0%, 산재보험6.6%, 고용보험 5.9%
  - ※ 분담비율은 '인건비,경비,사업비' 등 사업별 적용이 아닌 "일괄 적용"방안을 채택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사각지대 해소)

- (사업목적) 국민연금법에 의거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문서로 신고 및 확인사항을 통지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정통지 의무 이행 및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가입내역안내서, 자격변동통보서 등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법정통지 안내문 발송
- (사업시행방법) 국민연금공단 자체 안내 대상자 발취 및 안내문 발송
- (사업근거) 국민연금법 제 22조 및 제 23조,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 2. 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 내역

### □ 변경사유

####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19.5월 연도 중 예상치 못한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 통합징수사업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11~12월 고지서 발송이 불가함에 따라 13억5천만원 추가 필요(총 48억2천만원 중 연금 분담분 13억5천만원(28%))

· 우편요금 인상 (19년 5월 일반 330 → 380원, 등기 2,130 → 2,180원)  
※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고지서 우편 발송 비용을 마련하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사각지대 해소)

- 예상치 못한 우편요금 인상으로 19년도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변동 통지 등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부족함에 따라 10~12월 법정통지문 발송을 위해 9억9천1백만원 추가 필요
-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법정통지문 우편 발송 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 변경내역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증액)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13억5천만원
- (감액) 여유자금운용의 단기자금운용에서 13억5천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사각지대 해소)

- (증액) 국민연금 우편요금 인상분 사업비 9억9천1백만원
- (감액)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에서 7억5천만원 및  
여유자금운용의 단기자금운용에서 2억4천1백만원

###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 변경			주요변경 내역
	계획현액	변경요구	증감	
합 계	119,165,219	119,165,219	-	
[7300]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13,131	512,381	△750	
[7378]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	512,520	511,770	△750	
[605]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377,163	377,163	-	
[607]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112,035	111,285	△750	
[110] 인건비	22,353	21,603	△750	
[03] 상용임금	20,469	19,719	△750	- 법정통지문 발송 부족예산 활용
[614]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23,322	23,322	-	
[7400]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246,808	249,149	2,341	
[7431]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51,053	51,053	-	
[7432]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56,580	57,571	991	
[452]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관리	22,883	23,874	991	
[210]운영비	21,771	22,762	991	
[02]공공요금 및 제세	16,868	17,859	991	- 법정통지문 발송 부족예산 확보
[7433]국민연금 복지사업	68,068	68,068	-	
[7478]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71,107	72,457	1,350	
[601]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71,107	72,457	1,350	
[350]출연금	71,107	72,457	1,350	
[02]출연금	71,107	72,457	1,350	- 징수업무 위탁사업 부족 예산 확보
[7600]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23,019,300	23,019,300	-	
[9700]여유자금운용	95,385,980	95,384,389	△1,591	- 가입자관리사업 및 징수위탁사업 부족 예산 활용
[9720]여유자금운용(국민연금기금)	95,385,980	95,384,389	△1,591	
[972]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2,313,301	2,311,710	△1,591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2,313,301	2,311,710	△1,591	
[02]통화금융기관예치금	2,313,301	2,311,710	△1,591	- 가입자관리사업 및 징수위탁사업 부족 예산 활용
[974]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19,654,575	19,654,575	-	
[976]국민연금기금 국채외채권매입	34,338,104	34,338,104	-	
[977]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	20,460,000	20,460,000	-	
[978]국민연금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	18,620,000	18,620,000	-	

## 추가소요액 산출근거

###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당초) 71,107백만원 → (변경) 72,457백만원(1,350백만원 증)

◇ 우편요금 부족분(4,820백만원) 산출근거

(19.9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A)	집 행(B)	잔액 (C=A-B)	예 상 소요액(D)	과부족액 (C-D)
계	298,690	198,542	100,148	104,968	△4,820
사 업 비	88,142	67,705	20,437	25,257	△4,820
인 건 비	195,679	128,007	67,672	67,672	-
경 상 경 비	4,869	2,830	2,039	2,039	-
예 비 비	10,000	-	10,000	10,000	-

※ 우편요금 48억\* 부족하여 4대사회보험 11~12월 고지서 발송 불가  
 △ 48.2억원 = 1,391만건(1.1개월분<sup>1)</sup> 고지서 발송 건수) x 346.39원<sup>2)</sup>

주1) 5~8월 월 평균 고지서 발송 건수 = 1,278만건  
 주2) 5~8월 월 평균 고지서 발송 단가 = 346.39원(고지서 발송 비용 177억원 ÷ 4개월 ÷ 월 1,278만건)

○ 연금 추가 출연액 산출근거(1,350백만원)

- (사업비) 1,350백만원 = 4,820백만원('19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부족액)  
 x 28.0%(국민연금 분담비율)

\* 사업비 : 국민연금 보험료의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이 대부분 차지

▶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우편(330 → 380원) 및 등기요금(2,130 → 2,180원) 발송 비용 증가 반영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사각지대 해소)

###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 (당초) 16,868백만원 → (변경) 17,859백만원(991백만원 증)

#### ◇ 추가소요 예산(991백만원) 산출근거

(19.9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A)	집행(B)	잔액* (C=A-B)	집행율(B/A)	예상 소요액(D)	과부족액 (C-D)
총 예산	14,117	12,538	1,579	88.8	2,570	△991
공공요금 및 제세	14,117	12,538	1,579	88.8	2,570	△991

※ 우편요금 991백만원 부족하여 10~12월 가입자 등에 대한 법정통지문 발송 불가  
 △ 991백만원 = 2,570백만원<sup>1)</sup> - 1,579백만원

주1) 2,570백만원 = 일반우편 706만건 x 362원 + 등기우편 7,000건 x 2,180원

\* 고지서 발송 건수 = 일반우편 706만건(2.8개월분<sup>2)</sup> 발송 건수) + 등기 7,000건<sup>3)</sup>

\*\* 고지서 발송 단가 = 일반우편 362원(5~9월 일반우편 평균 단가) + 등기 2,180원('19. 5월 인상 단가)

주2) 5~9월 월 평균 일반우편 발송 건수 = 2,535,003건

주3) '18년 10~12월 사업장 일용근로자 및 가입확인대상자 직권가입처리에 따른 직권 가입결정통지서 발송 건수

▶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우편(330 → 380원) 및 등기요금(2,130 → 2,180원) 발송 비용 증가 반영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법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76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2호(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라 수행하는 전체 징수업무 중에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한다.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출연금 요구서에 사업 운영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76조의3(추가 출연)

-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연금이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드는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법 제 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 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 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 ① 공단은 법 제14조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법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체크리스트	검토 내용
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5월 예상치 못한 우편 요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전 안내 없이 2019년도 4월 5일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행정예고 → 2019. 5월부터 우편요금단가 380원 (330→380원, 15.1% ↑)</li> <li>※ 통합징수사업의 우편 요금 예산은 592억원으로 15.1% 적용 시 89억원 추가 소요 발생</li> </ul> </li> </ul>
② 현재 추진해야할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율 하락에 따른 막대한 재정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고지서 정상 발송불가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 추진 불가</li> <li>※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으로 미 발송 시 압류 등 체납처분 불가</li> <li>- 그에 따른 보험료 징수율 하락과 막대한 재정·기금 손실</li> <li>※ 징수율 1% 하락 시 1조원씩 손실 또는 수입금 입금 지연</li> <li>※ 연간 112조원* 징수(건강 54조, 연금 43조, 산재 6조, 고용 9조)</li> <li>* 2018년도 결산 기준</li> </ul> </li> </ul>
③ 기존사업 보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 업무는 '11.1월부터 추진 사업</li> </ul>
④ 외부기관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보건복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회계연도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 연금 분담금 증액 필요</li> </ul> </li> </ul>
⑤ 사업의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3(추가 출연)</li> </ul>
⑥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 없음</li> </ul>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  
- 사각지대 축소 사업비

체크리스트	검토 내용
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요금 인상* 등</li> <li>* 예산편성 당시 일반 330원 → 380원, 등기 2,130원 → 2,180원 인상('19.5.1)</li> </ul>
② 현재 추진해야할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법정통지 안내문을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통지지연 등 발송중단 불가피함</li> <li>- 따라서, 안내지연 및 중단으로 기금고갈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에게는 연금제도 및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 우려됨</li> </ul>
③ 기존사업 보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④ 외부기관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⑤ 사업의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법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등</li> </ul>
⑥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

(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

비 고	'19 당초(A)	'19 변경		증감	
		요구	검토(B)	(B-A)	%
<b>합 계</b>	119,165,219	119,165,219	119,165,219	-	-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13,131	512,381	512,381	△750	0.2
[7378]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512,520	511,770	511,770	△750	0.2
[605]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377,163	377,163	377,163	-	-
[607]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112,035	111,285	111,285	△750	0.7
[110] 인건비	22,353	21,603	21,603	△750	3.4
[03] 상용임금	20,469	19,719	19,719	△750	3.7
[614]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23,322	23,322	23,322	-	-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246,808	249,149	249,149	2,341	1.0
[7431]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51,053	51,053	51,053	-	-
[7432]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56,580	57,571	57,571	991	1.8
[452]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관리(사각지대축소/사업비)	22,883	23,874	23,874	991	4.4
[210] 운영비	21,771	22,762	22,762	991	4.6
[02] 공공요금 및 제세	16,868	17,859	17,859	991	5.9
[7433] 국민연금 복지사업	68,068	68,068	68,068	-	-
[7478] 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71,107	72,457	72,457	1,350	1.9
[601]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71,107	72,457	72,457	1,350	1.9
[350] 출연금	71,107	72,457	72,457	1,350	1.9
[02] 출연금	71,107	72,457	72,457	1,350	1.9
[7600]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등)	23,019,300	23,019,300		-	-
[9700] 여유자금운용	95,385,980	95,384,389	95,384,389	△1,591	-
[9720] 여유자금운용(국민연금기금)	95,385,980	95,384,389	95,384,389	△1,591	-
[972]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2,313,301	2,311,710	2,311,710	△1,591	-
[470]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2,313,301	2,311,710	2,311,710	△1,591	-
[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313,301	2,311,710	2,311,710	△1,591	-
[974] 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19,654,575	19,654,575	19,654,575	-	-
[976] 국민연금기금 국채외채권매입	34,338,104	34,338,104	34,338,104	-	-
[977] 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	20,460,000	20,460,000	20,460,000	-	-
[978] 국민연금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	18,620,000	18,620,000	18,620,000	-	-



□ 기관별 추가분담금 현황

수 입 항 목	추가 분담금 산정 내역
□ 건강보험분담금	당초 197,546 → 변경 200,414백만원(증 2,868백만원)
• 사업비분담금	$\cdot 2,868\text{백만원} = 4,820\text{백만원}(\text{19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부족액})$ $\times 59.5\%(\text{건강보험 분담비율})$
□ 국민연금기금분담금	당초 71,107 → 변경 72,457백만원(증 1,350백만원)
• 사업비분담금	$\cdot 1,350\text{백만원} = 4,820\text{백만원}(\text{19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부족액})$ $\times 28.0\%(\text{국민연금 분담비율})$
□ 산재보험기금분담금	당초 15,026 → 변경 15,344백만원(증 318백만원)
• 사업비분담금	$\cdot 318\text{백만원} = 4,820\text{백만원}(\text{19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부족액})$ $\times 6.6\%(\text{산재보험 분담비율})$
□ 고용보험기금분담금	당초 14,931 → 변경 15,215백만원(증 284백만원)
• 사업비분담금	$\cdot 284\text{백만원} = 4,820\text{백만원}(\text{19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부족액})$ $\times 5.9\%(\text{고용보험 분담비율})$

□ 연도별 기관별 분담금 세부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건강보험	국민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2019년	변경후	3,034 (100.0)	2,004 (66.1)	725 (23.9)	153 (5.0)	152 (5.0)
	변경전	2,986 (100.0)	1,976 (66.2)	711 (23.8)	150 (5.0)	149 (5.0)
2018년		3,002 (100.0)	1,931 (64.4)	778 (25.9)	145 (4.8)	148 (4.9)
2017년		2,856 (100.0)	1,799 (63.0)	767 (26.9)	143 (5.0)	147 (5.1)
2016년		2,813 (100.0)	1,755 (62.4)	767 (27.3)	147 (5.2)	144 (5.1)
2015년		2,776 (100.0)	1,728 (62.3)	758 (27.3)	150 (5.4)	140 (5.1)
2014년		2,701 (100.0)	1,680 (62.2)	739 (27.4)	149 (5.5)	133 (4.9)
2013년		2,664 (100.0)	1,659 (62.3)	723 (27.1)	149 (5.6)	133 (5.0)
2012년		2,586 (100.0)	1,607 (62.1)	705 (27.3)	145 (5.6)	129 (5.0)

※ 결산 기준('19년도는 예산 기준)

※ ( ) : 분담비율

- 분담비율은 확정된 사회보험 징수통합업무 수행인력 총 2,541명에 대한 기관별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 결정('10.8월) : 건강 1,512명(59.5%), 연금 712명(28.0%), 근복 317명(12.5%-산재보험6.6%, 고용보험 5.9%)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사각지대 해소)

### □ 사업예산 집행 현황

('19.9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향 후 소요액(D)	추가소요액 (E=D-C)
	목	세목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관리 (사각지대 축소/사업비)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4,117	12,538	1,579	2,570	991

#### [참고]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 공공요금및제세 예산(16,868백만원)
- 사각지대 축소 14,117,백만원, 수급권 확인 2,747백만원, 장애심사 4백만원